

하절기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 하절기 재해의 특징
- ✓ 주요 위험요인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 기타사항

2026년 6월

정기교안



01.

하절기 재해의 특징

1.1 개요

하절기에는 폭염, 장마, 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은 온열질환, 감전, 화재, 침수·붕괴, 밀폐공간 질식재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하절기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주요 위험요인

 <p>폭염에 따른 온열질환</p>	<p>하절기에는 기온 및 습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작업자의 체온조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시간 옥외작업이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열사병, 열탈진, 탈수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을 지속할 경우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추락·끼임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장마철 감전재해</p>	<p>장마철에는 습기 및 빗물로 인해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되고 누전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배선, 이동형 전기기기 및 노후 전선 등을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는 감전 및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p>
 <p>호우에 의한 침수·붕괴</p>	<p>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거나 작업장 내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굴착면 붕괴, 토사 유실 및 침수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공간이나 저지대 작업장은 침수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p>
 <p>밀폐공간 질식재해</p>	<p>하절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기물 부패 및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환기가 불량한 밀폐공간에서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사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
 <p>벌·해충 등에 의한 재해</p>	<p>하절기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벌, 해충, 진드기 등의 활동이 증가하여 야외작업 중 쏘임·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풀 인근이나 옥외설비 주변 작업 시에는 벌집 접촉, 피부 노출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으며,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 및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02.

주요 위험요인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2.1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주요 발생상황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시간대 옥외작업 및 장시간 현장작업 수행 • 냉방 및 환기가 부족한 실내공간 작업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없이 작업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운영 • 충분한 수분 및 염분 섭취 관리 • 작업장 내 냉방·환기설비 및 그늘막 설치 •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휴식 • 작업 전 건강상태 및 이상징후 확인 실시

▶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의 장기간 작업을 말합니다.

 폭염작업 간 안전기준

- ① 작업장에는 온·습도계 등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상시 비치하고, 폭염작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② 냉방·통풍장치 설치 및 가동,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작업장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③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폭염 노출을 줄이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합니다.
※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등 체온 상승 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 ④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및 옥외 그늘진 장소를 설치·운영하고, 휴게시설은 고열·다습 작업장과 격리된 장소에 마련합니다.
- ⑤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소금,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수분 및 염분을 적절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땀으로 작업복이 젖는 작업장의 경우 탈의시설, 세탁시설, 작업복 건조시설 등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 ⑦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⑧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 방열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합니다.
- ⑨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합니다.
- ⑩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며, 특히 습도가 높을수록 땀의 증발이 어려워 체내 열 방출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 \ 습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0	27.6	28.6	29.5	30.5	31.5	32.5	33.5	34.5	35.4	36.4	37.4	38.4	39.4
55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60	28.4	29.4	30.4	31.4	32.4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65	28.9	29.9	30.9	31.9	32.9	33.9	34.9	35.9	36.9	38.0	39.0	40.0	41.0
70	29.3	30.3	31.3	32.3	33.3	34.3	35.4	36.4	37.4	38.4	39.5	40.5	41.5
75	29.7	30.7	31.7	31.7	33.7	34.8	35.8	36.8	37.8	38.9	39.9	40.9	42.0
80	30.0	31.1	32.1	33.1	34.1	35.2	36.2	37.2	38.3	39.3	40.4	41.4	42.4
85	30.4	31.4	32.5	33.5	34.5	35.6	36.6	37.7	38.7	39.7	40.8	41.9	42.9
90	30.8	31.8	32.9	33.9	34.9	36.0	37.0	38.1	39.1	40.2	41.2	42.3	43.3
95	31.1	32.2	33.2	34.3	35.3	36.4	37.4	38.5	39.5	40.6	41.6	42.7	43.7
100	31.5	32.6	33.6	34.6	35.7	36.7	37.8	38.9	39.9	41.0	42.0	43.1	44.1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


▶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및 탈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옥외작업이나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심한 경우 의식저하 및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정의	주요 증상	조치 방법
<p>열사병 (Heat stroke)</p> 	<p>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심한 두통, 오한, 어지럼증 - 빈맥, 빈호흡, 저혈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및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합니다.
<p>열탈진 (Heat exhaustion)</p> 	<p>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근육경련, 구토, 어지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습니다.
<p>열경련 (Heat cramp)</p> 	<p>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될 수 있는데, 이때 체내 염분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p>열실신 (Heat syncope)</p> 	<p>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둡니다.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사고사례 I

사고경위	<p>근로자가 한여름 오후시간대에 옥외 설비 점검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됨</p>	 <p>본 이미지는 생성형 시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폭염시간대 장시간 옥외작업 실시 02 충분한 휴식 및 수분섭취 미실시 03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후 작업 지속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 실시 02 충분한 물·염분 섭취 및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 운영 03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실시 04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실시 	

○ 사고사례 II

사고경위	<p>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장시간 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로 및 집중력 저하 상태에서 이동하다 발을 헛디더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골절됨</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폭염에 따른 피로 누적 및 집중력 저하 02 충분한 휴식시간 미부여 03 작업강도 조절 미흡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주기적인 휴식 실시 02 폭염시간대 작업량·작업강도 조절 및 작업시간 관리 03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게시설 제공 04 관리감독 강화 및 작업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실시 	


○ 사고사례 III

사고경위	<p>근로자가 환기가 부족한 기계실 내부에서 장시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과도한 발한 및 탈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됨</p>	 <p>본 이미지는 생성형 시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작업 02 환기 및 통풍장치 미운영 03 체감온도 관리 및 건강상태 확인 미흡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냉방·통풍장치 설치 및 작업장 환기 실시 02 체감온도 수시 측정 및 작업환경 관리 강화 03 작업시간 조정 및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04 건강상태 확인 및 온열질환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 	

2.2 장마철 감전재해

주요 발생상황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 및 습기에 노출된 전기기기 사용 • 임시배선 및 노후 전선 사용 상태 작업 • 젖은 손 또는 습윤 환경에서 전기작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 및 접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동전선, 콘센트 및 전기기기의 절연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빗물 유입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수조치를 실시합니다. • 침수된 장소 및 누전 우려가 있는 구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 전기작업 전 전원 차단 상태 및 충전부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배선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사고사례 I

사고경위	<p>근로자가 장마철 옥외작업 중 임시로 연결된 전선을 이용하여 전동공구를 사용하던 중 빗물에 젖은 전선 접속부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감전 사고 발생</p>  <p style="font-size: small;">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방수조치 미흡한 임시배선 사용 02 빗물 및 습기에 노출된 전선 사용 03 전선 정리정돈 및 점검 미흡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임시배선 사용 최소화 및 방수조치 실시 02 전선 접속부 및 콘센트 절연상태 점검 03 빗물 유입 우려 장소 전기기기 사용 제한 04 젖은 손 및 습윤 환경에서 전기작업 금지


○ 사고사례 II

사고경위	<p>집중호우로 인해 작업장 일부가 침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현장 점검을 위해 출입하던 중, 침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감전 사고 발생</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침수된 전기설비에서 누설전류 발생 02 침수구역 출입통제 미실시 03 전원 차단 및 안전확인 없이 현장 출입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침수된 장소 및 누전 우려구역 출입통제 실시 02 침수 시 전기설비 전원 우선 차단 03 누전차단기 및 전기설비 이상 여부 점검 04 안전 확인 후 작업 및 현장 출입 실시

2.3 호우에 의한 침수·붕괴

주요 발생상황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호우로 지하 pit, 맨홀 및 저지대 작업장 침수 침수된 작업장 출입 중 고립 및 물에 빠짐 사고 발생 강풍 및 지반 약화에 따른 구조물·적치물 붕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호우 전 배수시설, 구조물 및 적치상태를 사전 점검합니다.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을 통제하고 위험구역 표지를 설치합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지하공간 및 위험지역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 침수 발생 시 수위 확인 없이 임의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

○ 사고사례 I

사고경위	<p>집중호우와 강풍이 지속되던 중 야외에 적치되어 있던 자재가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근로자가 깔려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p>  <p style="font-size: small;">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적치물 고정 및 전도방지 조치 미흡 02 강풍 및 집중호우 대비 사전점검 미 실시 03 위험구역 출입통제 미흡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집중호우 전 적치물 및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 02 강풍 우려 시 자재 적치 높이 및 적재상태 관리 03 붕괴 우려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표지 설치 04 기상악화 시 옥외작업 중지


○ 사고사례 II

사고경위	<p>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내 지하 pit 구역에 빗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으며, 근로자가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하던 중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립되는 사고 발생</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출입통제 미 실시 02 배수상태 및 침수위험 사전확인 미흡 03 비상대피 및 연락체계 운영 미흡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및 저지대 작업장 출입통제 실시 02 배수시설 및 침수위험 구역 사전 점검 강화 03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04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절차 사전 운영

2.4 밀폐공간 질식재해

주요 발생상황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정화조·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수행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 실시 • 환기 및 감시인 배치 없이 밀폐공간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합니다. • 비상구조 장비 및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합니다.

○ 사고사례 I

사고경위	<p>근로자가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조치 없이 내부에 출입하였으며,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 발생</p>  <p style="font-size: small;">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02 작업 전 환기조치 미흡 03 밀폐공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02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실시 03 밀폐공간 출입 전 작업절차 및 위험성 교육 실시 04 감시인 배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사고사례 II

사고경위	<p>탱크 내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유해가스에 의해 쓰러지자, 외부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없이 내부로 진입하여 구조를 시도하였고, 함께 질식되는 사고 발생</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 02 비상구조 절차 및 대응체계 미흡 03 감시인 및 외부 구조요청 절차 미이행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구조작업 실시 02 비상상황 발생 시 무리한 단독 구조작업 금지 03 감시인 배치 및 외부 구조요청 절차 운영 04 비상대응 및 구조훈련 주기적으로 실시

2.5 벌·해충 등에 의한 재해

주요 발생상황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풀 및 야외설비 주변 작업 중 벌 및 해충 접촉 배수로·옥외설비 점검 중 벌 및 해충 출현 피부 노출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작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 전 주변 벌집 및 해충 서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긴 소매 작업복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합니다. 벌집 발견 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해충기피제 및 개인 보호장비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벌 쏘임 및 해충 피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고사례 I

사고경위	<p>근로자가 사업장 옥외설비 주변에 형성된 벌집을 발견하고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직접 제거를 시도하던 중 벌이 몰려들어 얼굴 및 팔 부위를 쏘이는 사고 발생</p>  <p style="font-size: small;">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벌집 존재를 확인한 상태에서 임의 제거 작업 실시 02 안전조치 및 보호장비 미흡 03 벌집 주변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벌집 발견 시 근로자의 임의 제거 작업 금지 02 작업 중 벌집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통제 실시 03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한 제거 실시 04 벌 쏘임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 실시

○ 사고사례 II

사고경위	<p>근로자가 장마철 배수로 정비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수의 해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후 피부 발진 및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 발생</p>
사고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해충 서식 가능구역 사전확인 미흡 02 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 미흡 03 장시간 야외작업 중 해충 노출 지속
안전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작업 전 해충 서식 여부 및 주변 환경 사전 점검 02 해충기피제 및 개인 보호장비 사용 03 피부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호복 착용 04 해충 피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진료 실시

03.

기타사항

※ 하절기 재해예방 안전점검표(예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체감온도 및 폭염특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을 운영하고 있는가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충분한 물·음료수 및 염분을 제공하고 있는가				
체감온도 33℃ 이상 시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가				
폭염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강도 조절을 실시하고 있는가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장마철 감전재해				
누전차단기 및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이동전선 및 전기기기의 절연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침수 우려구역 출입통제 및 전원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3. 호우에 의한 침수·붕괴				
배수시설 및 배수로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가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및 지하공간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기상특보 시 작업중지 및 대피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적치물 및 구조물 전도·붕괴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4. 밀폐공간 질식재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가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고 있는가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있는가				
비상구조 장비 및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5. 벌·해충 등에 의한 재해				
작업 전 벌집 및 해충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해충기피제 및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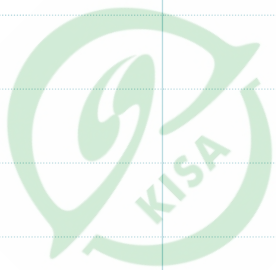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교육일시	년 월 일 : ~ : (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5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5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상 인원				【교육 참석자 명단】 참조
	참석 인원				
교육제목	하절기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교육내용	1. 하절기 재해의 특징 2. 주요 위험요인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3. 기타사항				
교육장소 및 실시자	교육장소	직 명		성 명	

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